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25. 1. .

발 의 자: 박선미 의원

1. 제안이유

- 가. 조레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구체화 · 안정화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 3. 21.)에 따라 차령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구체화(안 제1조)
- 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개정 시행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이유인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과 달리 정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시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무분별한 기본차량의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연장 요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